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5. 12. 18.
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5년 11월 7일

나. 제출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5년 11월 17일

라. 상정일자: 제266회 제2차 영등포구의회 정례회

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(2025. 11. 21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최봉순 안전교통국장)

가. 제안이유

-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건강과 교육·문화·예술·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우리구에서 설립·운영 중인 공공시설의 이용 접근성을 제고하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목적과 용어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셔틀버스 운영, 이용대상, 이용료(안 제3조~제5조)
- 셔틀버스 운행범위, 운행일자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제7조)
- 영등포구 노선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- 영등포구 노선조정위원회 회의 및 수당(안 제9조~제10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류데레사)

- 제정 배경 및 취지
- 영등포구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교육·문화·예술·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공공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, 일부 시설의 접근성이 낮아 교통약자 및 고령층 등의 이용에 불편함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.
- 이에 따라 구민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,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영등포구에서 설립·운영 중인 공공시설을 순환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한 것임.
- 한편,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셔틀버스 운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, 이에 대한 시정요구를 반영한 사항임.
- 또한, 서울시 내 6개의 자치구에서 이미 유사한 조례를 제정·시행 중에 있음.

□ 주요 내용

- 안 제2조(정의)는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인 “공공시설”과 “셔틀버스”에 대해 규정함.
 - 다만, 조례 해석의 명확성을 위해 정의 표현에서 “등”은 지양할 필요가 있으나, “영등포구에서 설립·운영”하는 시설에 한함으로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기재한 것으로 사료됨.
- 안 제3조(운영)는 구청장이 직접 셔틀버스를 운영하거나 필요시 민간 또는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,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
 - 셔틀버스 운행 중단 시 구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도록 규정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.
- 안 제4조(이용대상)는 구 보건소 이용자, 주민센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자, 구립 시설 이용자 및 교통약자로서, 본 조례안의 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규정함.
- 안 제5조(이용료)는 셔틀버스 이용료를 무료로 하도록 하여, 공공서비스로서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.
- 안 제6조(운행범위)는 셔틀버스의 노선을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설정하도록 하고, 노선 조정 시 ‘노선조정위원회’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, 형평성을 제고하고 투명한

노선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함.

- 안 제7조(운행일자)는 평일 운행을 원칙으로 하되, 시설 운영 여건에 따라 운행일자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탄력적이고 실질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.
- 안 제8조(위원회 설치 및 구성)는 셔틀버스 노선의 신설·변경·폐지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노선 결정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,
 - 위원으로 실질적인 셔틀버스 이용자인 주민의 대표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, 노선 운영의 실효성과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.
 - 다만,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은 “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”고 규정하면서, 단서 규정으로 “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”라고 명시하고 있음.
 - 한편, 안 제8조제5항은 “다만,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”고 규정하고 있어,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에서 요구하는 “위원회의 의결”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.
 - 상위법에서 이미 규정한 사항은 조례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적용되므로, 위원회 구성 시에는 「양성평등기본법」의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.
- 안 제9조(위원회 회의)는 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의결절차, 간사 지정, 회의록 작성 등 운영 사항을 규정함.
- 안 제10조(수당)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.

□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 등에 무료셔틀버스를 운영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및 교육·문화·예술·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고,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,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- 한편,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셔틀버스는 2026년 7월부터 운영

예정이며, 2026년도 예산안에도 6개월 운영분의 해당하는 5억 1,480만원이 편성되어 제출됨.

- 아울러 2027년 이후에는 연간 8억 8,400만원 수준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.
- 또한, 셔틀버스가 무료로 운행됨에 따라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“여객자동차운송사업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, 같은 법 제4조제1항에도 저촉되지 아니함.
- 아울러, 「공직선거법」 제112조제2항제4호제나목에서도 “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·방법·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”고 규정하고 있어, 본 조례안에 근거한 무료 셔틀버스 운행은 「공직선거법」에도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향후 시행에 있어 마을버스 노선과의 중복 구간을 최소화하여 운수업체와의 상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. 참고로 집행부서는 지난 10월 27일 마을버스 운수업체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음.
- 또한, 본 사업의 목적이 교통약자 및 건강·교육·문화 등 증진에 있는 만큼, 교통약자와 공공시설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, 사업 시행 시 이용 대상 확인 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.
-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,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 이용 활성화와 교통복지 향상이라는 지역사회 공익에 부합하며, 향후 구민 이동편의 증진과 구민의 건강과 교육·문화·예술·체육활동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

의 안 번 호	제660호
--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: 2025. 11. .
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건강과 교육·문화·예술·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우리구에서 설립·운영 중인 공공시설의 이용 접근성을 제고하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과 용어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나. 셔틀버스 운영, 이용대상, 이용료(안 제3조~제5조)
- 다. 셔틀버스 운행범위, 운행일자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제7조)
- 라. 영등포구 노선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- 마. 영등포구 노선조정위원회 회의 및 수당(안 제9조~제10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,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
- 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첨부
- 다. 협의사항
 - 1) 부패영향평가: 원안동의
 - 2) 인권영향평가: 별도 의견 없음
 - 3) 행정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 - 4) 성별영향분석평가: 별도 개선사항 없음
 - 5) 위원회 운영사항 검토 결과: 별도 개선사항 없음
- 라. 입법예고(2025.10.2.~10.22./20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과 교육·문화·예술·체육활동 증진 및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공공시설”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서 설립·운영하는 교육·문화·예술·체육·복지시설, 보건소, 공공도서관 등을 말한다.
2. “셔틀버스”란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을 연계하여 반복적으로 다니는 버스를 말한다.

제3조(운영)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 셔틀버스(이하 “셔틀버스”라 한다)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직접 운영하거나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관련 법인,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셔틀버스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,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- ③ 구청장은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, 그 사유와 중단 기간을 구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.

제4조(이용대상) 셔틀버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운행한다.

1. 구 보건소 및 보건분소에 진료 등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자
2. 동 주민센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자
3. 구에서 설립·운영(위탁을 포함한다)하는 교육·문화·예술·체육·복지시설 및 공공도서관 등의 이용자
4.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

제5조(이용료) 셔틀버스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.

제6조(운행범위) ① 셔틀버스는 공공시설을 주요 지점으로 하는 노선을 정하여 운행한다.

② 구청장은 셔틀버스 노선을 정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선조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친다.

③ 셔틀버스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 외로 운행할 수 없다.

제7조(운행일자) 셔틀버스는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행하되, 공공시설 등의 운영 여부에 따라 운행일자 및 운행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제8조(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 구청장은 셔틀버스 노선 신설·변경·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되,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·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1. 관계 공무원

2. 주민대표 및 교통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. 다만,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

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제9조(위원회 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셔틀버스 노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셔틀버스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.

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, 보존해야 한다.

제10조(수당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비용발생 내역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에 따른 세출 발생
2. 비용추계 기준 :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(1개 노선, 차량 6대, 전문업체 용역 기준)
3. 비용추계 상세내역 : 셔틀버스 운영 용역비, 정류소 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 비, 홍보비 등
4. 비용추계 결과

(단위 : 천원)

구분		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 계
세입	○							
	소계(a)							
세출	○ 용역비	432,000	864,000	864,000	864,000	864,000	3,888,000	
	○ 표지판 등 설치 및 유지관리	52,800	10,000	10,000	10,000	10,000	92,800	
	○ 홍보 등	30,000	10,000	10,000	10,000	10,000	70,000	
	소계(b)	514,800	884,000	884,000	884,000	884,000	4,050,800	
<input type="checkbox"/> 총 비용(a-b)		-514,800	-884,000	-884,000	-884,000	-884,000	-4,050,800	

* 1차년도: '26. 7월부터 6개월 운영(1개 노선, 차량 6대), 공공시설 셔틀버스 개통식 개최 및 홍보비 반영

* 2차년도~5차년도: 매년 1개 노선, 차량 6대 운영 가정

5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 : 천원)

구분		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 계
시비	국비							
	지방세수입							
	세외수입							
민간								
기타		514,800	884,000	884,000	884,000	884,000	4,050,800	
합계		514,800	884,000	884,000	884,000	884,000	4,050,800	

6. 추가의견: 없음

7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안전교통국 교통행정과 김미라
연락처	02-2670-7573